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대수선인가?

지난 3월호에 우리회 대구경북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민원 질의회신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진보강설계가 건축설계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어 의견을 올립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내진보강설계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 외에도 건축사의 마감상세도 및 관련 시방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같이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설계 결과 보강방법이 대수선 등에 해당되어 허가절차의 필요시 건축사를 통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면작성 및 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의 자격을 요하고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피력한 바와 같이 내진보강설계와 환경개선사업이 동시에 발주된다면, 건축사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은 이미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업무범위에 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만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 건축사와 같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구조기술사에 의하여 수행된 내진보강설계의 결과, 보강방법이 대수선에 해당되어 허가절차가 필요하다면 차후에 발주되는 내진보강공사용역에 건축사에 의한 허가절차를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즉, 교육청 담당자는 “내진보강 설계용역”과 “내진보강 공사용역”의 업무범위와 책임기술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현재와 같은 업무분담 기준의 부재로 인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내진보강설계의 결과,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의 외부에 별도로 제진댐퍼를 부착하는 경우와 조적조 벽체 대신에 콘크리트 전단벽을 추가한다거나 기둥과 보의 내진성능이 부족하여 탄소섬유나 강판보강을 실시한 경우, 이러한 내진보강방법이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건축사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내진보강



강 석 규 우리회 부회장
(주)상원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방법 어느 것에도 내진벽, 기둥, 보를 해체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에 의한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진보강설계용역에 건축사와 공동도급을 요구한 것은 교육청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불필요한 업무분담의 혼선만을 야기한 것으로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또한 내진보강공사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각 관리주체에서 내진보강 계획수립 및 추진하는 행위로서, 건축법에 규정된 "대수선"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혹은 형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이지만, 내진보강은 용도나 기능의 변경 없이 지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부재에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대수선"으로 볼 수가 없으며, 또한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리모델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구조부인 기둥에 기존단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섬유슈이트로 보강하거나 외부에 제진댐퍼를 설치하였지만 건물 용도나 규모, 형태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용도상의 기능 향상이 아닌 구조성능만을 향상한 것으로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해체가 없는 대수선은 건축신고 만하면 되므로 건축사에 의한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위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구경북지부 총무 김숙향 회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첨부합니다.

〈김숙향님의 의견〉

"대수선"의 법적인 뜻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저도 교육청 관계자에게 대수선이 아니라고 해 보았으나 그 담당자 말이 어떤 목적으로든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수선인 것은 맞지만 아래 법령에 따라 "그리고 건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해체가 없는 대수선은 건축신고 만하면 되므로 건축사에 의한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건축사의 허가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진단이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대한 평가 없이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